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의하되, 3회이상 게재하여야”를 “3회이상 게재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하여야”로 한다.

제8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4(이사회 소집 공지) 이사장은 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늦어도 회의 7일 전까지 학교법인이 설치·운영하는 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이사회 소집 일시, 장소 등을 공지하여야 한다.

제10조의 제목 “(임시이사의 선임청구)”를 “(임시이사의 선임청구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법 제25조”를 “법 제25조제1항”으로 한다.

제10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5조 제6항에 따라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소송비용을 청구할 경우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임시이사 선임 처분의 원인을 제공한 자 또는 그 관련자가 학교법인 또는 임시이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거나 고소, 고발을 하여 수사나 재판이 진행되는 경우

2. 학교법인이 임시이사 선임사유의 해소를 위해 특정인에게 금원 회수의

방법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3. 관할청의 임원취임승인취소 또는 임시이사 선임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그 소송에 학교법인이 보조참가하는 경우
4. 기타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에서 교직원 인사, 노무관계 등 이사회 운영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여 학교법인 또는 임시이사가 소송의 상대방이나 수사대상이 되는 경우

제10조의6제1항 본문 중 “교원·직원·조교”를 “11명 이상의 평의원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교원·직원·조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평의원회에 의장과 부의장 각각 1명을 두며, 평의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 경우 의장은 학생이 아닌 평의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평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학생인 평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기본재산 관련 소송 시 관할청 신고) ①학교법인은 기본재산에 대한 소송 절차가 개시된 경우 그 절차가 개시된 날 또는 절차의 개시를 안 날로부터 30일 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관할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원고, 피고 등 당사자의 성명·명칭 또는 상호와 주소
2. 대리인이 있는 경우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3. 청구취지

4. 청구원인

5. 사건의 표시

6. 관할 법원

7. 그 밖에 관할청이 요청하는 자료

② 학교법인은 기본재산에 대한 소송절차의 심급별 종국판결이 선고된 후 30일 내에 재판 결과와 향후 추진 계획을 관할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24조의2제1항 중 “법 제54조의5제1항제2호”를 “법 제61조의2제4항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54조의5제2항”을 “법 제61조의2제1항”으로 한다.

제25조의4제2항제3호 중 “법 제66조의4제1항제3호”를 “「교육공무원법」 제52조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별표 2 제2호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단위: 만원)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이상 위반
가. 학교법인의 이사장·감사 또는 청산인이나 사립학교경영자(법 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또는 이사)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 1) 이 법에 따른 등기를 하지 않 은 경우 가) 등기 지연 기간이 1개월	법 제74조제2항 제1호	200		

미만인 경우				
나) 등기 지연 기간이 1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인 경우			300	
다) 등기 지연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500	
2)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공고를 하지 않거나 공고해야 할 사항을 허위로 또는 누락하여 공고한 경우	법 제74조제2항 제2호	150	300	500
3) 법 제13조에 따라 준용되는 「민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재산목록 또는 법 제32조(법 제5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37조제1항에 따른 재산목록, 그 밖의 서류를 비치하지 않거나 이에 기재할 사항을 허위로 또는 누락하여 기재한 경우	법 제74조제2항 제3호		300	
4) 법 제19조제4항제3호·제48조(법 제5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보고해야 할 사항을 허위로 또는 누락하여 보고한 경우	법 제74조제2항 제4호	150	300	500
5) 법 제28조제5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74조 제2항제4의2호			
가) 신고 지연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200	
나) 신고 지연 기간이 1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인 경우			300	

다) 신고 지연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500	
6) 법 제31조(법 제5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37조제2항 또는 제38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74조제2항 제5호		300	
7) 법 제42조에 따라 준용되는 「민법」 제79조 또는 제93조 제1항에 따른 파산선고의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74조제2항 제6호		300	
8) 법 제42조에 따라 준용되는 「민법」 제88조제1항 또는 제93조제1항에 따른 공고를 하지 않거나 공고할 사항을 허위로 또는 누락하여 공고한 경우	법 제74조제2항 제7호		300	
9) 법 제42조에 따라 준용되는 「민법」 제86조 또는 제94조에 따른 신고를 태만하거나 부실한 신고를 한 경우	법 제74조제2항 제8호		300	
10) 법 제42조에 따라 준용되는 「민법」 제90조를 위반한 경우	법 제74조제2항 제9호		300	
11) 법 제72조의3에 따른 공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개한 경우	법 제74조 제2항 제10호	150	300	500
나. 대학교육기관의 장 및 대학교육기관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이사장이 법 제32조의2 제5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보고해야 할 사항을 거짓으로 또는 누락하여 보고한 경우	법 제74조제3항	150	300	500

다.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권자가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보고를 한 경우	법 제74조제4항	150	300	500
라. 사립학교 교원 또는 제70조의2 에 따라 임명된 사무직원의 임 용권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법 제54조제3항 후단을 위반 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관할청 의 해임 또는 징계 요구를 따 르지 않은 경우	법 제74조제1항 제1호	300	600	1,000
2) 법 제54조의2제1항 후단을 위 반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관할 청의 해임 요구를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74조제1항 제2호	300	600	1,000
3) 법 제66조의2제3항을 위반하 여 재심의를 요구하지 않은 경 우	법 제74조제1항 제3호	300	600	1,000
5) 법 제70조의5제3항 후단을 위 반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관할 청의 징계의결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법 제74조 제1항제5호	300	600	1,000
6) 법 제70조의6제3항을 위반하 여 재심의를 요구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74조 제1항제6호	300	600	1,000
7) 법 제70조의7제1항 각 호 외 의 부분 후단을 위반하여 특별 한 사유 없이 관할청의 해임 요구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	법 제74조 제1항제7호	300	600	1,000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 제12조의2, 별표 2 제2호 가목5)의 개정규정은 2022.2.11.부터 시행하고, 제8조의4, 별표 2 제2호 가목11) 및 라목5), 6), 7)의 개정규정은 2022.3.25.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6조(정관보충의 절차) ① (생략)	제6조(정관보충의 절차)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공고는 전국을 보급 대상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의하 되, 3회이상 게재하여야 한다.	② ----- ---- 3회이상 게재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하여야 -- -.
③ (생략) <신설>	③ (현행과 같음) 제8조의4(이사회 소집 공지) 이사 장은 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 에 따라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 는 늦어도 회의 7일 전까지 학 교법인이 설치.운영하는 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이사회 소집 일시, 장소 등을 공지하여 야 한다.
제10조(임시이사의 선임청구)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해관 계인이 교육부장관에게 임시이 사의 선임을 청구함에 있어서는 청구사유와 이해관계인임을 증 명하는 서류를 구비하여야 한 다. <신설>	제10조(임시이사의 선임청구 등) ① 법 제25조제1항----- ----- ----- -----.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5조제6항에 따라 임시이사

가 선임된 학교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소송비용을 청구할 경우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임시이사 선임 처분의 원인을 제공한 자 또는 그 관련자가 학교법인 또는 임시이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거나 고소, 고발을 하여 수사나 재판이 진행되는 경우

2. 학교법인이 임시이사 선임사유의 해소를 위해 특정인에게 금원 회수의 방법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3. 관할청의 임원취임승인취소 또는 임시이사 선임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그 소송에 학교법인이 보조 참가하는 경우

4. 기타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에서 교직원 인사, 노무관계 등 이사회 운영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여 학교법인 또는 임시이사가 소송의 상대방이나 수사대상이 되는 경우

제10조의6(대학평의원회의 구성)

①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대학평의원회의(이하 “평의원회”라 한다)는 교원·직원·조교 및 학생 중에서 각각의 구성단위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으로 구성하되, 동문 및 학교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을 포함할 수 있다. 다만, 평의원회의의 구성단위 중 어느 하나의 구성단위에 속하는 평의원의 수가 전체 평의원 정수의 2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②평의원회는 11인 이상의 평의원으로 구성한다.

<신 설>

③ (생략)

<신 설>

제10조의6(대학평의원회의 구성)

① -----
----- 11명 이상의 평의원
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교원·
직원·조교 -----

-----.

-----.

②평의원회에 의장과 부의장 각각 1명을 두며, 평의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 경우 의장은 학생이 아닌 평의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평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학생인 평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제12조의2(기본재산 관련 소송 시

관할청 신고) ①학교법인은 기본재산에 대한 소송 절차가 개시된 경우 그 절차가 개시된 날 또는 절차의 개시를 안 날로부

제24조의2(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통
보 등) ① 법 제62조제1항 본문
에 따른 교원징계위원회는 의원
면직을 신청한 교원이 법 제54조
의5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다른 징계사건에 우선하여
징계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감사·조사 및 수사기관의

터 30일 내에 다음 각 호의 내
용을 포함하여 관할청에 신고하
여야 한다.

1. 원고, 피고 등 당사자의 성명
· 명칭 또는 상호와 주소
2. 대리인이 있는 경우 대리인
의 성명과 주소
3. 청구취지
4. 청구원인
5. 사건의 표시
6. 관할 법원
7. 그 밖에 관할청이 요청하는
자료

② 학교법인은 기본재산에 대한
소송절차의 심급별 종국판결이
선고된 후 30일 내에 재판 결과
와 향후 추진 계획을 관할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24조의2(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통보 등) ① -----
----- 법 제61
조의2제4항제2호-----
-----.

② ----- 법 제61

장은 <u>법 제54조의5제2항</u>에 따라 의원면직의 제한대상에 해당하 는지 여부의 확인 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확인 결과를 해당 학교 교원의 임용권자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u>조의2제1항</u>----- ----- ----- -----.
제25조의4(징계의 감경기준) ① (생 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 1. · 2. (생 략) 3. <u>법 제66조의4제1항제3호</u>에 해당하는 성 관련 비위로 징 계의 대상이 된 경우 4. ~ 11. (생 략) ③ · ④ (생 략)	제25조의4(징계의 감경기준)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 2. (현행과 같음) 3. 「<u>교육공무원법</u>」 제52조 각 <u>호의 어느 하나</u>----- ----- 4. ~ 11. (현행과 같음) ③ · ④ (현행과 같음)